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전현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4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.

발 의 자 : 전현희 · 홍기원 · 한준호
김병주 · 이정문 · 정태호
추미애 · 김영배 · 김영환
이학영 · 김 윤 · 윤종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에 따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,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참전유공자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).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 이 경우 지급방법,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의 배우자 승계에 대한 적용례)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당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조의2(권리의 보호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된다. 이 경우 지급방법, 지급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② (생략)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.	④ ----- 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